부분용입용접 크기기준, 최소용접각장 추가 및 극후강판 안전조치 변경

■ 주요 개정 사항 요약

관련 규칙	시행 일정
14편 컨테이너선 규칙	2020년 1월 1일(선박 건조계약일 기준) 시행사항

■ 주요 개정 사항

○ 개정 사유

부분 용입 용접에 대한 판정기준 및 최소용접각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, 극후강판 안전조치로 B선택 시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 요구가 있었음

○ 개정 사항

부분 용입 용접 크기 판별식을 추가하고 및 선루 및 갑판실에 대한 최소용접각장을 3.5mm로 추가함. 극후강판 적용 시 안전조치로 B를 선택 시 인성증가 용접을 실시하도록 함.

○ 영향 분석

✓ 안전, 보안 또는 환경보호에 미치는 영향 및/또는 기여

: 부분 용입 용접 판정 기준 추가 및 극후강판 적용 시 안전조치로 안전성 증가

✓ 순치수 또는 총치수에 미치는 영향

: 해당 사항 없음